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0885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8. 7. 26.

판결 선고2018. 9. 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105,995원 및 그 중 488,879,855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1)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4. 5.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6. 12. 26.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308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6. 12. 28. 접수 제1129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4. 5.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6. 12. 26.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422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6. 12. 27. 접수 제1180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6항 및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4. 5.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422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7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4. 5.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6. 12. 26.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563,369,7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C는 원고에게 563,369,7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0. 11. 26.과 2011. 6. 24. 각 보증계약(차례로 '제1보증계약', '제2보증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는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계약체결일, 채권자, 최종 변경된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2010. 11. 26.	우리은행	2017. 2. 1.	170,000,000	200,000,000
2011. 6. 24.	국민은행	2017. 6. 16.	331,500,000	390,000,000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르면, 가) 피고 A가 원고가 보증한 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등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가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 또는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법인기업의 대표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 A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그 외에 피고 A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피고 A와 B은 이의 없이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국민은행은 2016. 12. 30. 원고에게 제2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016. 11. 25. 피고 A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 A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보증채무 청구에 따라 2017. 5. 18. 우리은행에게 제1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대출금채무 164,832,456원을, 국민은행에게 제2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대출금채무 324,047,39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2017. 5.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며, 제1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위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추가보증료 975,63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

15,250,51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 A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05,105,995원(= 제1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164,832,456원 + 제2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324,047,399원 + 제1보증계약의 추가보증료 975,630원 + 법적절차비용 15,250,510원) 및 그 중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대위변제금 합계 488,879,855원(= 제1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164,832,456원 + 제2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324,047,3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5. 18.부터 이 사건 2018.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8. 1.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 9, 15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제7, 8, 20,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피고 B과 피고 C는 1988. 12. 12. 혼인하였는데, 피고 B은 1997. 11. 28. 피고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8. 10. 2.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서울가정법원 97드97421).
- 2) 피고 B은 2009년경부터 피고 C와 별거하다가 다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09드합11907), 이에 피고 C도 피고 B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09드합11914), 2010. 12. 29. 피고 B과 C가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3) 피고 B은 2014. 3. 19.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피고 B과 피고 C는 2014. 5. 14. 이혼합의서(이하 '2014. 5. 14.자 이혼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혼합의서

이 사건 합의서는 2014. 5. 14.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되었다.

1. 피고 B, C는 법적인 부부인데, 피고 B의 사업운영으로 인하여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부부간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2. 이에 피고 B, C는 본 합의서 체결 후 최대한 신속히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다.

3. 피고 B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됨에 따라 피고 B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하기로 한다.

(i) 금 30억 원 지급

(ii)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서울 강남구 D건물 제2층 제201호,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F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G, H에 있는 각 토지 및 본 합의서 체결 이후 피고 B 소유(피고 B 자신의 명의 또는 피고 B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 등을 모두 포함함)로 확인된 재산을 피고 C 소유로 이전.

4. 피고 B은 제3항에 의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체결일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서울 강남구 D건물 제2층 제201호,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F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G, H에 있는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액 30억 원, 채권최고액 36억 원(채권액의 120%), 근저당권자를 피고 C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이하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5. 피고 B, C는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각 공유지분 1/2씩 공유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의 매각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계약금 및 잔금)의 1/2을 피고 B, C가 각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다.

6. 아들 J과 딸 K의 양육권은 피고 C가 갖는다.

4) 피고 B은 2014. 5. 16. 피고 C에게 2014. 5. 14.자 이혼합의서에 따라 당시 피고 B이 그 명의로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1) 과 서울 강남구 D건물 제2층 제201호,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F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G, H에 있는 각 토지2) '에 관하여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피고 B이 2014. 5. 14.자 이혼합의서에 따라 제출하기로 한 협의이혼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 C는 2016. 12. 2.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6드합42664), 2016. 12. 26.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 B, C는 이혼한다.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6, 11항 제외)에 관하여 2016. 12. 26. 재산분할(이하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사건본인(K)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C를 지정한다.
4. 피고 B은 피고 C에게 피고들의 자녀인 J과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 1.부터 2022. 12. 31.까지 월 5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J과 사건본인이 각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비를 지원한다.
5. 피고 B, C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각자 그 명의대로 귀속됨을 확인하고, 이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6) 피고 B은 위 조정조항에 따라 2016. 12. 27.이나 2016. 12. 28. 당시 피고 B이 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의 전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1) 원고의 주장 가)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초한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초한 사전구상금채권이 존재하였으며,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은 피고 B의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별지 목록 제7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 후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을 2018. 7. 26. 기준 원고의 구상금채권액인 563,369,7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563,369,7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청구 부분

(1) 피고 B이 2014. 5. 14.자 이혼합의서에서 정한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14. 5. 1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시로부터 2012. 2. 20. 압류집행이 있었다가 2013. 9. 13. 해제되었고, 역삼세무서로부터 2013. 4. 8. 압류집행이 있었다가 2013. 8. 7. 해제되었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초세무서로부터 2015. 1. 29. 압류집행이 있었다가 2015. 8. 5. 해제되었고, 서울시로부터 2015. 3. 19. 압류집행이 있었다가 2015. 4. 23. 해제된 사실 및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6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4. 24.부터 2014. 4. 30.까지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1의 가.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제2보증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한 보증사고가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2년 6개월 11일이 지난 2016. 11. 25.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거나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에 관한 청구 부분

(1)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 또는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국민은행이 2016. 12. 30. 원고에게 제2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016. 11. 25. 피고 A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실제 원고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보증채무 청구에
따라 2017. 5. 18. 우리은행에게 제1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대출금채무 164,832,456원을,
국민은행에게 제2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대출금채무 324,047,399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제1의 가. 항에서 본 것과 같다.

(나) 따라서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사후적인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2017. 5. 18. 합계
488,879,8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으로서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2)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나) 제2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의 이자연체를 이유로 한 보증사고(2016. 11. 25.)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6. 12. 2. 피고 C가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24일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되었으며,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에서 당시 피고 B이 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 전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5, 8, 9호증, 을다 제5, 6, 9, 10, 11호증, 제13 내지 19호증,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이 명목상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에 해당한다거나,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B은 피고 C를 상대로 1997. 11. 28.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C도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여러 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 B이 2009년경부터 피고 C와 별거하였고 그 후 다른 여성과 동거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 C와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을 하기 훨씬 전인 2009년경 이미 피고 B과 피고 C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의 내용은 사실상 피고 B과 피고 C의 협의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작성된 2014. 5. 14.자 이혼합의서에서 정한 피고 B 소유의 부동산들 중 2014. 5. 14.자 이혼합의서 작성 후 피고 B이 처분한 부동산을 제외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그대로 이행한 것인데, 2014. 5. 14.자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B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 C에게 30억 원의 지급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서울 강남구 D건물 제2층 제201호,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F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G, H에 있는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중 하나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다.

③ 2014. 5. 14.자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B과 피고 C는 당시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2014. 5. 15. L에게 위 각 부동산을 3,750,000,000원에 매도하여 당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A 및 피고 B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였고, 피고 C는 나머지 매매대금 중 1/2인 786,656,487원만 입금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위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 A 및 피고 B을 채무자로 한 채무액 변제 등을 포함하여 2,963,343,513원(= 3,750,000,000원 - 786,656,487원)의 이익을 얻었다.

④ 또한,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서울 강남구 D건물 제2층 제201호,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F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G, H에 있는 각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서울 강남구 D건물 제2층 제201호의 매매대금은 1,010,000,000원이고,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F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 G, H에 있는 각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합계 1,848,994,000원이므로, 피고 B은 2014. 5. 14.자 이혼합의서 작성 후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위 각 부동산들의 처분을 통해 최소 5,822,337,513원(= 2,963,343,513원 + 1,010,000,000원 + 1,848,994,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C가 2014. 5. 14.자 이혼합의 및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받은 재산의 가액은 4,291,227,887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 3,504,571,400원 +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 중 분배받은 돈 786,656,487원)이라 할 것인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의 송파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8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 C는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보존을 위하여 송파농업협동조합에게 피고 A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고 있으며(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변제한

이자액만 합계 42,824,926원이다), 별지 목록 제7항 내지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이자 지상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피고 A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는 데 합계 61,068,469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밖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막기 위해 피고 B이 체납한 국세, 지방세 등 합계 884,358,840원[= 서초세무서 국세 465,822,510원3) + 서울시 지방세 48,077,250원 + 의정부시 지방세 2,383,340원 +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체납 재산세 6,717,060원 +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토지 및 지상 주택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361,358,680원(= 153,293,860원 × 2 + 30,658,770원 + 24,112,19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1,142,975,652원(= 4,291,227,887원 - 2,160,000,000원 - 42,824,926원 - 61,068,469원 - 884,358,840원)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14. 5. 14.자 이혼합의서 작성 후 피고 B의 재산처분으로 인한 이득이나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 후 체납세금의 변제 등 피고 B이나 피고 A의 채무와 관련된 피고 C의 변제는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의 상당성 판단에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B과 피고 C가 2014. 5. 14.자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이혼의사의 합치에 이르렀으므로, 그 후 피고 B의 재산처분은 실질적인 재산분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의 상당성 판단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C가 2016. 12. 2.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피고 B의 세금 체납 등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송파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과 피고 C는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 당시 피고 B의 세금 체납 등과 피고 A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로 인한 피고 C의 부담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⑥ 설령, 원고의 2017. 11. 27.자 준비서면의 주장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4,488,644,182원으로 보더라도,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2,127,048,434원(=

4,488,644,182원 + 786,656,487원 - 2,160,000,000원 - 42,824,926원 - 61,068,469원 - 884,358,840원)이라 할 것인데, 위 ③항 및 ④항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 B이 재산처분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최소 5,822,337,513원 이상인 점,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피고 C가 피고 B과 1988. 12. 12. 혼인한 후 20년 이상 두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피고 B의 계속된 외도 등에 기인하여 2009년경 별거를 하는 등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이러한 B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등이 2014. 5. 14.자 이혼합의 및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에 반영된 점, 피고 C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에서 두 자녀의 양육비와 대학 졸업때까지의 학비를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피고 B의 무자력으로 피고 C가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2016. 12. 26.자 재산분할약정에 관한 청구 부분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종택

판사김용신

판사서지혜

별지

- 1)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은 2016. 11. 2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서 분할되었다.
- 2)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 G, H에 있는 각 토지는 그 후 F에 있는 토지에

합병되었다.

3) 피고 C는 465,822,510원에 관한 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위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있다.